

보구녀관 규정

2020. 8. 19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,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모태로서 복원된 보구녀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보구녀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보구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의료원과 의과대학, 간호대학의 역사 전시 및 사적 홍보
2. 의료원과 의과대학, 간호대학의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
3. 의료원과 의과대학, 간호대학의 사료 발굴 및 보관, 관리
4. 이화여자대학교 구성원 및 외부인에 대한 이화 의학의 역사 교육
5. 의료원과 의과대학, 간호대학의 역사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
6. 기타 보구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관장) ① 보구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관장은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보구녀관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5조(행정인력) 보구녀관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6조(보구녀관 운영위원회) ① 보구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구녀관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의무부총장, 의과대학장, 간호대학장, 교목실장, 역사관장, 보구녀관장,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장, 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장,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의무부총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,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구녀관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보구녀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보구녀관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보구녀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8조(사업계획 및 보고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보구녀관 규정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9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보구녀관의 예산은 기부금, 기타 수입으로 편성한다.

② 보구녀관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보구녀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0. 8. 19. 제정)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